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4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목 차

1. 용도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총괄	
1-1. 적용요령	3
1-2. 일반사항	3
1-3. 참고사항	5
2. 공사비(용도 및 공사종별) 책정 가이드라인	
2-1. 업무시설 (119안전센터, 공공업무사무소, 소방서 복지지원센터, 복합청사, 동청사, 의회청사)	6 7
2-2.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박물관, 문화예술회관·문화집회시설)	8 8
2-3.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 장애인·노인자활작업장)	9 10
2-4. 의료 및 교육연구시설 (병원, 보건소, 산모건강증진센터, 대학교·교육센터, 도서관, 연구시설)	10 11 12
2-5. 노유자시설 (육아보육, 키즈센터, 경로당, 노인정,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수련시설)	12 13 14
2-6. 운동시설 (체육관, 배드민턴장)	14
2-7. 기타 (공중화장실, 환승센터·주차장전용, 자재보관창고, 친환경전용건축, 공영주차장, 폐기물중간처리)	15 16
2-8. 리모델링·개보수(리모델링, 개보수)	17
2-9. 목조건축물	18
3. 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19
4. 석면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1
5. 설계용역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	
5-1. 설계·감리용역비	23
5-2. 설계공모 보상비	27
5-3. 건설사업관리 대가	28
5-4. 설계의도구현 대가	29
5-5. 전기설계용역 분리 발주를 위한 전기공사비	32

1. 용도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총괄

1-1. 적용요령

- 본 자료는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자료로서 사업계획 수립시 개략적인 공사비 추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임
- 단, 공모설계 등으로 선정된 건축물로서 특수용도, 건설목적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건축물은 그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조사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2. 일반사항

- 본 자료의 공사비 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적용함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기준년도 대상공사	2022년 3월	2023년 3월	2024년 3월	상승율
비주택 건축	121.50	127.09	129.74	▶'22.3.~'24.3.: 6.78%

* 건설공사비지수 기준년도 개정(2015=100 → 2020=100)

- 신축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준 자료로서, 공사비는 이설비(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를 제외한 발주금액(도급비+부가가치세+관급비)을 말함

- 증축(수평) : 기존 건축물과 별도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신축공사 대비 대지 조성, 조경, 토목 및 부대시설비가 절감됨
 - 신축 공사비의 95% ~ 100% 범위임

- 증축(수직) :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토공사비가 절감되며, 수직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음. 본 가이드라인은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공사비가 고려되어 있지 않음
 - 신축 공사비의 85% ~ 90% 범위임

-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한 자료이므로 구조(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등), 지하층 유무, 세부 공간구성, 마감재 수준 등 시공내용에 따라 공사비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고, 관계법령의 개정과 원가 산정 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가격 등의 변경을 반영할 수 있음(예, 주휴수당 등)

- 리모델링, 개보수 등의 공사는 공사범위에 따라 평균 공사비 차이가 많아 일괄적인 적용이 곤란하므로 계획 중인 공사 여건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2-8, 리모델링, 개보수 참고)

- 기후변화 대응에 요구되는 목조건축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목조건축물 공사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산림청 목조건축물의 적용사례를 게재 (2-9, 목조건축물 참고)

- 본 자료는 2024.3월 기준 상승률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사비이므로 당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할 경우, 향후 설계 등 절차상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공사발주 시점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당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
 - ※ 제시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1-3. 참고사항

건축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다음 용역비 및 공사비 등은 예산 편성 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함

- 건축관련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용역비(필요시), 기본계획 용역비(필요시)
 - 기존 건물, 구조물 철거관련(설계, 감리비, 석면철거) 및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
 - 교통, 환경영향 평가비,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
 - 설계공모비(설계공모 시행 비용, 설계보상비 등), 설계비, 감리비, 설계VE 비용, 설계감리비(필요시), 측량비 등
- 건축 공사비는 본 공사비, 부대공사비(펜스, 안내사인물, 보안·안전시설 등)
 - 이전비(전기수용, 수도, 가스), 기존건물 철거비, 기타 지장물 이설비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술작품 설치비 등
 - 시설부대비(계약체결 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등 법정요율 및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행정감독 및 검수비 등)
- 동 가이드라인 외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공사비 정보광장” (<http://pcae.g2b.go.kr>)의 유형별 예상공사비 산정 등을 참고 바람
- 공공건축 지열시스템 도입 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열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의 지열시스템 도입 시 공사비 가산 (5.7%)

지열시스템 도입 활성화 계획(미래공간기획담당관 2024.4.18.)

- 건축구분 : 신축
- 면적기준 : 연면적 3,300㎡ 이상 (부지면적 720㎡ 이상)
- 용도기준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2-1. 업무시설

119 안전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800㎡미만	3,337	3,171	2,936	
800㎡~900㎡	3,301	3,170	-	
900㎡초과	3,147	3,020	-	
평 균	3,239	3,110	-	

공공업무사무소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미만	4,541	4,189	3,748	
500㎡~1,500㎡	4,423	4,067	-	
1,500㎡~5,000㎡	4,161	3,880	-	
5,000㎡초과	4,076	3,809	-	
평 균	4,175	3,900	-	

소방서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3,000㎡미만	3,338	3,205	2,839	
3,000㎡~5,000㎡	3,231	3,101	-	
5,000㎡초과	3,162	3,035	-	
평 균	3,226	3,096	-	

복지지원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0㎡미만	4,417	4,241	3,760	
5,000㎡~15,000㎡	4,243	4,074	-	
15,000㎡초과	4,118	3,954	-	
평 균	4,520	4,077	-	

복합청사 (대형청사)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3,000㎡미만	4,019	3,668	3,280	
3,000㎡~4,000㎡	3,883	3,524	-	
4,000㎡~10,000㎡	3,835	3,491	-	
10,000㎡초과	3,734	3,372	-	
평 균	3,902	3,543	-	

동청사(자치회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500㎡미만	4,179	3,849	3,632	
1,500㎡~2,000㎡	4,067	3,801	-	
2,000㎡초과	3,974	3,676	-	
평 균	4,061	3,727	-	

의회청사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500㎡미만	4,577	4,394	4,028	
1,500㎡~5,000㎡	4,447	4,267	-	
5,000㎡초과	4,352	4,177	-	
평 균	4,442	4,267	-	

2-2.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박물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3,000㎡미만	4,880	4,881	4,418	- 전시물 및 전시대 설치비 제외 됨
3,000㎡~5,000㎡	4,712	4,756	-	
5,000㎡~10,000㎡	4,643	4,659	-	
10,000초과	4,583	4,584	-	
평 균	4,664	4,662	-	

문화예술회관 · 문화집회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3,000㎡미만	5,084	4,892	4,288	
3,000㎡~4,000㎡	5,025	4,835	-	
4,000㎡~10,000㎡	4,916	4,729	-	
10,000㎡초과	4,814	4,632	-	
평 균	4,912	4,725	-	

2-3.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단위 : 천원/㎡]

구분 규모(연면적)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1,000㎡미만	4,360	4,001	3,667	
1,000㎡~3,000㎡	4,298	3,944	-	
3,000㎡~5,000㎡	4,188	3,844	-	
5,000㎡초과	4,128	3,788	-	
평균	4,192	3,849	-	

장애인복지관

[단위 : 천원/㎡]

구분 규모(연면적)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1,000㎡미만	3,969	3,923	3,439	
1,000㎡~3,000㎡	3,947	3,901	-	
3,000㎡~5,000㎡	3,829	3,786	-	
5,000㎡초과	3,719	3,676	-	
평균	3,833	3,770	-	

노인복지센터

[단위 : 천원/㎡]

구분 규모(연면적)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1,000㎡미만	4,500	4,075	3,750	
1,000㎡~3,000㎡	4,477	4,071	-	
3,000㎡~5,000㎡	4,390	3,997	-	
5,000㎡초과	4,269	3,872	-	
평균	4,351	3,992	-	

노인요양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2,000㎡미만	4,241	4,071	3,605	
2,000㎡~5,000㎡	4,157	3,991	-	
5,000㎡~10,000㎡	4,039	3,877	-	
10,000㎡초과	3,916	3,760	-	
평 균	4,172	3,877	-	

장애인·노인 자활작업장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2,000㎡미만	3,608	3,464	3,165	
2,000㎡~5,000㎡	3,570	3,429	-	
5,000㎡~10,000㎡	3,502	3,362	-	
10,000㎡초과	3,436	3,298	-	
평 균	3,507	3,366	-	

2-4. 의료 및 교육연구시설

병원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0㎡미만	5,257	5,047	4,626	
10,000㎡~30,000㎡	5,064	4,862	-	
30,000㎡~50,000㎡	4,952	4,753	-	
50,000㎡초과	4,917	4,680	-	
평 균	5,054	4,853	-	

보건소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3,892	3,737	3,426	
1,000㎡~2,000㎡	3,888	3,732	-	
2,000㎡~3,000㎡	3,815	3,662	-	
3,000㎡초과	3,706	3,557	-	
평 균	3,819	3,667	-	

산모건강 증진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4,992	4,638	4,251	
1,000㎡~3,000㎡	4,965	4,613	-	
3,000㎡~5,000㎡	4,860	4,514	-	
5,000㎡초과	4,725	4,388	-	
평 균	4,870	4,524	-	

대학교 · 교육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0㎡미만	3,466	3,495	3,163	
5000㎡~10,000㎡	3,381	3,395	-	
10,000㎡~20,000㎡	3,311	3,349	-	
20,000㎡초과	3,296	3,343	-	
평 균	3,388	3,392	-	

도서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500㎡미만	4,465	4,135	3,625	
1,500㎡~2,000㎡	4,428	4,100	-	
2,000㎡~6,000㎡	4,354	4,014	-	
6,000㎡초과	4,230	3,922	-	
평 균	4,360	4,001	-	

연구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0㎡미만	5,390	5,176	4,743	-설비공사비 증가 (환기, 온습도 등)
10,000㎡~15,000㎡	5,223	5,013	-	
15,000㎡~20,000㎡	5,098	4,946	-	
20,000㎡초과	5,077	4,873	-	
평 균	5,234	5,010	-	

2-5. 노유자 시설

육아·보육, 키즈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0㎡미만	4,577	4,050	3,673	
5,000㎡~8,000㎡	4,503	3,985	-	
8,000㎡~10,000㎡	4,397	3,877	-	
10,000㎡초과	4,334	3,850	-	
평 균	4,421	3,896	-	

경로당, 노인정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200㎡미만	3,852	3,698	3,389	
200㎡~400㎡	3,742	3,593	-	
400㎡초과	3,685	3,538	-	
평 균	3,740	3,589	-	

주민공동이용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200㎡미만	4,578	4,380	4,014	
200㎡~400㎡	4,501	4,305	-	
400㎡초과	4,365	4,174	-	
평 균	4,497	4,302	-	

어린이집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미만	4,927	4,466	4,094	
500㎡~800㎡	4,902	4,445	-	
800㎡~1,000㎡	4,763	4,320	-	
1,000㎡초과	4,615	4,185	-	
평 균	4,759	4,315	-	

청소년 · 문화수련시설

[단위 : 천원/㎡]

구분 규모(연면적)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1,500㎡미만	4,050	3,838	3,448	
1,500㎡~2,000㎡	4,048	3,830	-	
2,000㎡~6,000㎡	3,860	3,712	-	
6,000㎡초과	3,796	3,633	-	
평균	3,921	3,708	-	

2-6 운동시설

체육관(체육센터)

[단위 : 천원/㎡]

구분 규모(연면적)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3,500㎡미만	4,352	4,373	3,927	-주요시설: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농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탁구장 등) -기타 수영장, 볼링장 등
3,500㎡~5,000㎡	4,313	4,359	-	
5,000㎡~10,000㎡	4,222	4,313	-	
10,000㎡초과	4,127	4,263	-	
평균	4,215	4,308	-	

배드민턴장

[단위 : 천원/㎡]

구분 규모(연면적)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500㎡미만	3,022	2,757	2,466	-주요구조 (비율) ▶철골구조(50%)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50%)
500㎡~1,000㎡	3,014	2,684	-	
1,000㎡초과	3,008	2,662	-	
평균	3,013	2,677	-	

2-7. 기타

공중화장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미만	4,579	4,395	4,030	- 화장실 전용으로 독립된 건축물이며 디자인 및 편의시설이 고급화된 시설임
50㎡~100㎡	4,460	4,281	-	
100㎡~200㎡	4,365	4,190	-	
200㎡초과	4,310	4,138	-	
평 균	4,443	4,266	-	

환승센터, 주차장 전용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2,000㎡미만	3,254	2,885	2,644	
2,000㎡~5,000㎡	3,193	2,830	-	
5,000㎡~10,000㎡	3,114	2,761	-	
10,000㎡초과	3,037	2,692	-	
평 균	3,132	2,778	-	

자재보관 창고(차량 정비고)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2,227	2,139	1,961	
1,000㎡~2,000㎡	2,196	2,107	-	
2,000㎡~3,000㎡	2,136	2,051	-	
3,000㎡초과	2,058	1,976	-	
평 균	2,143	2,057	-	

친환경 전용건축(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8,701	8,352	7,655	- 자재비(건축재료)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증가
1,000㎡~3,000㎡	8,532	8,190	-	
3,000㎡~5,000㎡	8,278	7,948	-	
5,000㎡초과	8,035	7,713	-	
평 균	8,283	7,952	-	

공영주차장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3,057	2,875	2,632	
1,000㎡~3,000㎡	3,021	2,841	-	
3,000㎡~5,000㎡	2,966	2,788	-	
5,000㎡초과	2,890	2,716	-	
평 균	2,964	2,785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4,871	4,676	4,287	- 플랜트(기계, 장비비) 설치비 증가
1,000㎡~3,000㎡	4,801	4,609	-	
3,000㎡~5,000㎡	4,718	4,530	-	
5,000㎡초과	4,579	4,395	-	
평 균	4,720	4,531	-	

2-8. 리모델링, 개보수

리모델링

[단위 : 천원/㎡]

구분 용도(발주기관)	종별	연면적 (㎡)	공사비	공사비/㎡	공사범위
강북노동자복지관 (도기본 건축부)	리모델링 (증축)	2,773 (513)	6,168,276	2,899	외벽(치장벽돌, 외단열시스템),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서울연극센터 (도기본 건축부)	리모델링	1,019	3,327,453	4,257	외벽(아연도금강판),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용산구 보훈회관 (용산구 건축과)	리모델링	1,067	2,320,519	2,667	외벽(알루미늄시트판넬, 징크판넬),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마포아트센터 (마포구 건축과)	리모델링 (증축)	4,776 (960)	15,688,376	4,281	외벽(포천석버너구이),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종로구립 우리들놀이터 (종로구 건축과)	리모델링 (증축)	456 (244)	1,569,238	4,216	외벽(알루미늄 패널),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초,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강동50플러스센터 (강동구 건축과)	리모델링	1,956	3,313,822	2,077	외벽(현무암판석),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성동구 건축과)	리모델링	330	590,378	2,333	외벽(화강석, AL복합판넬 등),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북구 건축과)	리모델링 (증축)	664 (260)	1,984,192	3,897	외벽(벽돌패널, 와이드블럭), 내부, 방수, 창호, 유리, 파일기초,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마포 여성센터 (마포구 건축지원과)	리모델링	624.2	1,774,011	3,044	외벽(벽돌마감),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소극장 (서대문구 건축과)	리모델링	289.8	1,257,333	4,435	내부, 기계, 전기, 통신 (음향시설 포함)
시민주도학습플랫폼 (도기본 건축부)	리모델링	1,793.87	3,824,819	2,277	외벽(외단열+스타코),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소방
서남병원 (도기본 건축부)	리모델링 (증축)	6,257.65 (3,893.36)	45,548.027	6,258	외벽(알루미늄판넬),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소방

* 건축법 제2조1항 10호에 의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행위로서, 법적 리모델링 공사가 아닐 수도 있음

* 공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개·보수

[단위 : 천원/㎡]

구 분 용 도(발주기관)	종별	연면적 (㎡)	공사비	공사비/㎡	공사범위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강서구 건축과)	개보수	2,854	1,226,021	560	바닥 : 바니시마감, 비닐타일, 에폭시코팅 벽 : 수성페인트, 흡음보드 천장: 천정텍스, 흡음보드 기계(EHP, 공조설비, 자동제어), 전기(저압분전반), 통신(방송설비, CCTV)
은평구 보훈회관 (은평구 건축과)	개보수	951	1,132,115	1,551	바닥: 포세리타일, 데코타일, 자기질 바닥타일, 화강석버너구이 벽 : 방염벽지, 수성페인트, 도기질타일 기계(열원설비,공조설비), 전기, 통신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 건축과)	개보수	6,828	2,983,752	1,656	천장: 방청페인트 기계(공기조화기 및 덕트, 자동제어 철거 및 신설) 배관단열재, 차염소독설비 공사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서대문구 건축과)	개보수	845.26	1,027,526	1,377	외벽 : 테라코타, 스타코, 알루미늄시트 창호 : 커튼월 바닥 : 리놀륨시트, PE필름 벽 : 경질우레탄보드

- * 건축법 제2조1항 10호에 의한 "리모델링"이 아닌 마감재료 교체, 수선, 장비교체 등 구조적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 공사임
- * 공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2-9. 목조건축물

[단위 : 천원/㎡]

구 분 용 도(발주기관)	연면적(㎡)	층수	공사비/㎡	구조	착공연도
돈화문 민요박물관 (도기본 건축부)	1,384.82	지상1층/지하2층	7,895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018
상계9동 한옥어린이집 (노원구 건축과)	546.04	지상2층/지하1층	5,228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015
한그린 목조관 (국립삼림과학원)	1,233.08	지상5층/지하1층	5,191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017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9,812.39	지상7층/지하1층	4,073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022

- * 공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3. 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3-1. 일반사항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고 건축 폐재류는 재활용 방안 적극강구
- 해체물의 종류와 규모에 맞게 공법을 선정하여 공정표 작성 및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대책 수립
- 비산분진과 소음 등의 차단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설올타리를 설치하고 가설급수와 가설전기를 원활히 공급
-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23.7.) 준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 신고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허가대상
 -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축물 및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버스정류장,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 존재 시 해체 허가를 득하여야 함

3-2. 철거 공사비 적용

- 본 자료의 공사비는 우리시에서 시행한 철거공사 실적을 평균 공사비로 제시한 것으로서, 철거재의 성상, 공사여건, 철거장비, 안전시설의 설치정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본 공사비 기준을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자료를 탄력적으로 활용
 -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위한 철거공사의 경우, 철거폐기물 운반비용(소운반 및 인력운반) 및 상처비에 대한 누락이 잦으므로 적용여부 검토 필요
- 기간 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적용

[철거 공사비 및 철거 설계비 등 조사자료]

[단위 : 천원/㎡]

철거건축물	철거 및 설계현황	공사비	설계비	기 타
국세청 남대문별관	지상6층 연면적 4,223㎡, 공사비 319,793천원, 2015년 시행 75.726천원/㎡, 설계비 20,600천원	122.7	7.9	· 지하층 철거제외 · 철거시 안전전문가 확인 (경비반영) · 가설비계 및 안전망, 기림막 보강
서울의료원	9개동, 연면적 27,743㎡ 공사비 3,806,900천원, 2022년 시행 137,220천원/㎡, 설계비 113,500천원	147.0	4.09	· 석면해체 ,폐기물 처리 별도 · 가설비계 및 안전망, 기림막 보강
평 균		134.8	6.0	

* 공사비 등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 **공사비는 설계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가세가 포함됨**

※ 건설기술심의 대상 건축물 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설계심의 신청시 철거계획을 건설기술 심의도서에 포함하여 제출

3-3. 철거비 및 설계비 책정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층수)	철거비	철거설계비	비 고
6층 이상	101.7	4.8	- 가설비계, 가림·분진 방지 시설 등 도심 지 안전시설 보강, 아트웍스 설치 - 철거재 재활용(매각처리)등 계획 - 조적조, 목조건축 등 철거비는 별도산정(감액산정)
3층~5층	97.4	4.6	
2층 이하	91.8	4.3	
평 균	97.5	4.6	

4. 석면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4-1. 일반사항

- 일반 건축물의 연면적 50㎡이상,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200㎡이상,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등 설비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철거 전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기관석면조사를 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업 시작 7일전 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석면해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 공사시행토록 함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참고(2022. 11. 환경부 발행)

4-2. 철거공사비 적용

- 본 공사비는 우리시에서 시행한 석면해체 공사의 실적공사비로 제시한 것으로서, 시설 사용 중 석면 철거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보양시설 및 철거 시간의 제약(야간작업 등) 철거 여건에 따라 공사비 편차가 심함
- 따라서 현장별 석면철거 공사비 및 감리비 현황을 참고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석면 철거공사 및 석면 감리비 등 조사자료]

[단위 : 천원/m²]

철거건축물	철거 및 설계현황	공사비	감리비	기 타
개화119안전센터	- 석면재 해체·철거 847m ² - 해체공사비 47,850천원, 2021년 시행	69.3	4.5	· 외벽 석면제거 · 가설비계 및 가림분진방지 시설 설치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 석면재 해체·철거 3,221.34m ² - 해체공사비 139,176천원, 2018년 시행	59.8	-	· 재건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 · 가설울타리·가설대문·쪽문 설치 및 철거
목동 119안전센터	- 석면재 해체·철거 1,581m ² - 해체공사비 54,273천원, 2021년 시행	42.1	-	· 외벽 석면제거
동대문소방서 (3개동)	- 석면재 해체·철거 847m ² - 해체공사비 105,710천원, 2019년 시행	93.0	-	· 본관 등 3개소 석면제거 · 가림, 분진방지시설 설치
미아119안전센터	- 석면재 해체·철거 778m ² - 해체공사비 89,873천원, 2021년 시행	141.6	5.0	· 외벽 석면제거
마포소방서 외 2개소	- 석면재 해체·철거 1,729.17m ² - 해체공사비 51,500천원, 2019년 시행	39.5	3.0	· 가림막 설치
시흥5동 주민센터	- 석면해체철거 747m ² - 해체공사비50,609천원, 2022년시행	72.30	-	
금천국제외국어센터 기존건물	- 해체면적 550.62m ² - 해체공사비47,772천원, 2024년시행	88.60	-	조사비용 별도
독산2동 주민센터	- 해체면적 1056.5m ² - 해체공사비44,843천원, 2021년시행	52.00	-	

* 공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 공사비는 설계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가세가 포함됨

5. 설계용역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

5-1. 설계·감리용역비 산정기준

-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1)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이하		12.55	10.46	8.36	11.41	9.51	7.61	10.22	8.51	6.81
1억원		11.48	9.56	7.65	10.43	8.69	6.95	9.38	7.82	6.25
2억원		9.99	8.33	6.66	9.08	7.57	6.05	8.16	6.80	5.44
3억원		8.68	7.23	5.78	7.88	6.57	5.26	7.08	5.90	4.72
5억원		7.90	6.58	5.26	7.18	5.98	4.79	6.46	5.38	4.30
10억원		7.03	5.86	4.68	6.39	5.32	4.26	5.75	4.79	3.83
20억원		6.22	5.19	4.15	5.66	4.72	3.77	5.09	4.24	3.40
30억원		5.91	4.93	3.94	5.38	4.48	3.58	4.84	4.03	3.23
50억원		5.72	4.76	3.81	5.20	4.33	3.46	4.68	3.90	3.12
100억원		5.58	4.65	3.72	5.07	4.22	3.38	4.56	3.80	3.04
200억원		5.42	4.51	3.61	4.92	4.10	3.28	4.43	3.69	2.96
300억원		5.32	4.44	3.55	4.84	4.03	3.23	4.36	3.63	2.91
500억원		5.25	4.38	3.50	4.77	3.98	3.18	4.30	3.58	2.87
1,000억원		5.14	4.29	3.43	4.68	3.90	3.12	4.21	3.50	2.80
2,000억원		5.06	4.22	3.38	4.60	3.84	3.07	4.14	3.45	2.76
3,000억원		5.01	4.17	3.34	4.55	3.79	3.03	4.10	3.42	2.73
5,000억원		4.93	4.11	3.28	4.48	3.73	2.99	4.03	3.36	2.69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2)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건축법에 의한 감리)

(단위 : %)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천만원 이하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응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4)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의 양” 구분

- 기본 :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
- 중급 : 공중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 상급 :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자,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p>※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p>
2 종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장례식장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p>※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p>
3 종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설계용역비 (건축법에 의한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산출) 예시

공 사 비	설 계 비 (천원)			감리비(천원) (건축법 감리)
	1종(중급)	2종(중급)	3종(중급)	
1억	7,820	8,690	9,560	2,110
2억	13,600	15,140	16,600	3,360
3억	17,700	19,710	21,690	4,620
5억	26,900	29,900	32,900	7,150
10억	47,900	53,200	58,600	12,300
20억	84,800	94,400	103,800	22,600
30억	120,900	134,400	147,900	32,700
50억	195,000	216,500	238,000	53,500
100억	380,000	422,000	465,000	104,000
300억	1,089,000	1,290,000	1,332,000	300,000
500억	1,790,000	1,990,000	2,190,000	490,000
1000억	3,500,000	3,900,000	4,290,000	970,000

※ 본 자료는 신축일 경우 “도서의 양 중급”으로 적용한 개략 설계비와 건축법 감리대상 건축물의 제2종(보통)으로 적용한 감리비를 산정한 예시 임 (부가가치세 제외)

5-2. 설계공모 보상비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2021.6.21.

- 발주기관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되는 금액은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공모 보상비 지급 기준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도시공간개선단 2015.4.15.)

- 발주기관은 건축가의 설계공모 참여환경 조성과 저변 확대 및 실험적 시도를 통한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 창작동기 부여와 설계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모안의 작성 비용 일부를 보상한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 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설계경기 보상금 지급기준]

탈락자수	해당금액	보상금 지급률			
		1위	2위	3위	4위
4명	설계비의 10% (최대1억원 범위)	4/10	3/10	2/10	1/10
3명		4/10	3/10	2/10	
2명		4/10	3/10		
1명		1/3			

5-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1)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하게 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 : 총공사비 200억 이상인 22개 공종 (시행령 55조 관련)
- 부분책임관리 : 발주기관이 부분책임관리 대상공사로 인정하는 공사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2)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산정
(시공단계의 기술인수는 기술지원기술인수를 포함)
-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

건설사업관리대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추가업무)+(손해보험공제료)+(부가가치세)

5-4. 설계의도구현 대가

1) 설계의도 구현

-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 적용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지급 기준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도시공간개선단 2020.6.6.)

- 대가적용: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율 방식 중 택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대가=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참고(국토교통부 고시)
 - ※ 단순 자문비 지급으로 설계의도 구현이 건축가의 무상 서비스 영역이 되지않도록 주의
 - 설계비 비율방식 적용: 별표1 설계의도 비율표 참조

3) 설계의도 구현 업무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격 사항 확인·자문·해석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 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775호, 2020. 11. 4) 및 설계의도 구현 세부 업무내용(도시공간개선단) 별표2 참조

[별표 1]

[설계의도 구현 대가 요율]

공사비	설계의도구현 요율(설계비기준)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000만원	19.90	19.32	18.90
1억원	19.36	18.91	18.46
2억원	18.89	18.19	17.92
3억원	18.34	17.81	17.40
5억원	17.86	17.21	16.79
10억원	17.05	15.94	15.53
20억원	14.24	13.43	12.43
30억원	12.76	11.60	10.32
50억원	9.59	8.72	7.84
100억원	9.34	8.50	7.64
200억원	9.05	8.23	7.41
300억원	8.98	8.17	7.35
500억원	7.40	6.98	6.29
1000억원	3.84	3.62	3.26
2000억원	1.97	1.86	1.67
3000억원	1.35	1.28	1.15
5000억원	0.84	0.79	0.71

-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감리 직접 시행으로 대체 가능(감리비 수의계약 범위 내)
- ※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30% 이상 변경 될 경우 용역비 정산(공기연장, 참여횟수 증가 등)
 - 계약 시 대비 설계자의 참여 횟수 및 범위 등에 대해 30% 증가감이 있을 경우
- ※ 패스트트랙 사업, 대상지가 서울 이외 타시도의 경우 대가의 30% 추가 적용
- ※ 위 표에 따라 대가 산정 시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을 경우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
- ※ 부가세 별도

[별표 2]

[설계의도 구현 세부 업무 내용]

단 계	설계의도구현 업무
공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의도 전달 : 시공자, 감리자에게 설계의도를 전달
공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공정 및 품격과 관련된 공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건축주와 협의된 공정 및 품질 및 품격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정에 협의 및 참여 ○ 자재와 장비의 확인 ·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 시공 상세도의 검토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의 품격과 품질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 · 확인 (필요시 추가 상세 도면 요청) ○ 전기 등 설비 설계 엔지니어와 협의 ·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토목 등 (분리발주 되는)분야의 엔지니어와 공사 중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사항에 대해 협의 및 조정 ○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 ·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과 함께 설계변경 내용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무 수행 시 별도의 계약 체결 ○ 인테리어 등 디자인업무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테리어 등 디자인업무의 시공이 설계의도 구현과 부합되도록 자문 ○ 디자인자문단에 설계의도를 반영한 디자인안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공사 착수 전 부대시설 및 내부마감 자재·재질·색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자문단 협력
공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 제안(필요시) : 향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 제안 ○ 설계의도구현 완료보고서 제출 : 공사 완료 후 건축주에 제출 ○ 준공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서명 : 공사완료 후 절차에 따라 서명

5-5. 전기설계용역 분리 발주를 위한 전기공사비

1) 일반사항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용역비 2.2억원 이상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바닥면적 합계 2천㎡ 미만 건축물 제외)은 전력 시설물의 설계 시 타 분야 용역과 분리 발주해야함
- 전기설계용역 대가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며,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전체공사비 대비 전기공사비 비율과 단위면적 당 전기공사비를 조사자료를 활용해 전기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공사비 추정
- 기간 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적용
- 신축의 경우 건축설계 이후 전기설계가 가능한 점에 따라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전기공사비 등 조사자료]

[단위 : 천원/㎡]

용 도	업무시설	복지시설	의료 및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
조사대상	27개사업	8개사업	10개사업	34개사업	8개사업	7개사업
비 율 (전기공사비/전체공사비)	11.90%	11.57%	10.35%	10.00%	8.92%	9.70%
단위면적 당 전기공사비	541	470	460	504	365	388

* 공사비 등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 공사비는 설계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가세가 포함됨